


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|
|  | <h2 style="margin: 0;">재입학운영규정</h2> | 규정번호 | 3-3-06 |
| | | 제정일자 | 2008. 7. 1. |
| | | 개정일자 | 2025. 9. 1. |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경민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 이라 한다) 학칙 제26조에 의한 재입학의 자격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(개정 2016.3.1.)

제2조(대상) 본 대학에 재적하였던 자로서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자퇴 및 제적된 자에 한하여 재입학을 실시할 수 있다. (개정 2025.9.1.)

1. 학칙 제29조에 의한 자퇴 자
2. 학칙 제30조에 의한 제적 자

제3조(시기) 재입학의 시기는 매 학기 개시 이전으로부터 수업일수 1/4선 이내로 한다. (개정 2015.9.1.)

제4조(허용범위) ① 재입학은 학과별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. (개정 2016.8.1.)

② 재입학은 자퇴 및 제적 당시와 동일한 학과(전공) 및 동일학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③ 재적당시의 학과(전공)가 통·폐합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통·폐합 또는 변경된 학과(전공)로 재입학할 수 있다. 단, 학과가 폐과된 경우에는 원하는 학과로 재입학 할 수 있다. (개정 2016.3.1., 2018.11.1.)

제5조(절차) 재입학 운영 절차는 다음과 같다. (개정 2014.10.6., 2019.8.1)

1. 재입학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기간에 교무학생처에 제출한다.
2. 학과에서 접수된 재입학신청서는 교무학생처에 제출하며 검토 후 해당학과에 송부한다.
3. 해당학과에서는 접수된 재입학대상자를 상대로 전형을 실시한다.
4. 학과에서는 대상자들의 사정결과보고서를 학과(전공)교수회의 심의 후 교무학생처에 제출한다.
5. 교무학생처에서는 학과에서 결정된 사항(사정결과)을 확인 후 총장의 결재를 득한다.
6. 재입학신청대상자가 확정되면 교무학생처에서는 해당 학과에 통보한다.

제6조(사정기준) 재입학에 따른 사정기준은 학과의 특성에 따라 자율 시행한다. (개정 2014.10.6., 2016.3.1.)

제7조(등록) ① 재입학생은 소정의 기일 내에 해당학기 입학금과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. 단, 졸업유보자가 재입학을 할 경우 학칙 시행세칙 제10조(졸업유보자의 등록)에 의하여 일부 과목 수강이 허가된 자는 다음의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 (개정 2016.3.1.)

1. 1학점부터 3학점까지 당해 학기의 수업료의 6분의 1 해당액
2. 4학점부터 6학점까지 당해 학기의 수업료의 3분의 1 해당액
3. 7학점부터 9학점까지 당해 학기의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
4. 10학점 이상은 당해 학기 수업료의 전액

② 재입학이 허가된 자가 지정된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
제8조(학점인정) 재학 당시에 취득한 학점은 모두 인정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졸업유보자의 경우 당해 학기의 성적을 취득하여야 한다. (개정 2016.3.1.)

이 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. 부 칙

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부 칙

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부 칙

이 규정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부 칙

이 규정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부 칙